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 2020년 농업기술원 -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



## 〈 목 차 〉

1.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	1
2.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5
3. 000 시설개선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	8
4. 연구과제사업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마련 .....	11
5. 관외출장 여비 부적정 수령 .....	14
6.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	21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개선 요구

제 목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0000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0000(0000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0000에서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이라 한다)」에 따라 각종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2.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 중에서 연구주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하고, 제3항에는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 예규문서 작성 및 취급규정」 제3조(구비요건) 따라 예규를 제정할 때는 그 내용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익에 적합하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0000에서는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법령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연구주체의 장(0000)은 안전관리비 편성 부서의 장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을 위원

으로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00에서는 2000. 0. 00.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000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규정 이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을 개정 심의·의결하면서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기준을 위반한 규정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잘못된 규정과 지침에 따라 위원회 구성시에는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에서 위원으로 지정하도록 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간사로 지정하였고, 위원 자격이 없는 00담당과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00과 000)를 위원으로 지명하였으며,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성부서의장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소속된 부서의 장인 00000을 위원으로 지명하지 않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연직 위원장으로 000국장을 명시함으로서 「연구실 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를 위반하여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 사실이 있다.

### 3.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내역 보고 소홀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구실안전법」 제13조(비용의 부담)에 따라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에 따라 연구기관 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료,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건강검진, 안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보호장비 구입, 안전점검 및 진단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하며, 연구주체의 장은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매년 4월 30일까지 계상한 해당

연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내역과 전년도의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OOOO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는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하고, 계상된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그 용도대로 사용한 후에는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 까지 당해연도 계상내역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OOOO(OOO과)에서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계상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사용하고도 그 내역서를 작성 및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매년 4월 30일까지 해당 연도 계상 내역과 전년도 사용내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아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 관리비의 계상, 집행 및 보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4.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소홀**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연구실안전법」 제18조(교육·훈련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시간은 【표3】 과 같다.

**【표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9조제2항 관련)**

교육 과정	교육시간	교육시기 및 주기
1. 신규교육	18 시간 이상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2. 보수교육	12 시간 이상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따라서, OOOO에서는 「연구실안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는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신규교육 18시간 이상, 매2년마다 보수교육 12시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00에서는 2018. 3. 8.부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신규 선임된 000과 지방00000 000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sup>1)</sup>에 신규교육을 18시간 이상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문교육(신규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0000 0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경상남도000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경상남도000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이행 연구실 안전관리지침」을 관련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법률을 이행하도록 각별하게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0000은

- 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책임자인 000과 지방00000 000, 실무담당자 000과 지방00000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0000은 「경상남도0000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규정 이행 연구실 안전관리 지침」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하여 주시고,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도 법령에 맞게 구성·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 등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000)에 대해서 18시간 이상의 안전관련 신규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개선)

1) 선임일로부터 6개월 : 2018. 9. 8.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0000(000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0000(000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0000에서는 2017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0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 2. 시설비 운용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0대 원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 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출예산을 집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에 따르면 시설비(401-01)는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문화재 발굴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청사의 대규모 도장 등 그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대규모 수리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공운영비(201-02)의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시설 및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 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0000에서는 LED 등 교체, 선반 제작·설치건에 대해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등 적정한 예산 항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다르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3.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

####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Ⅲ.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비(401-01)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또한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0000에서는 “0000연구동 옥상방수코팅 및 외벽도색공사” 등 00의 공사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000 옥상방수코팅공사” 등 00건 0000천 원을 지방의회 의결

을 받거나,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0000에서는 앞으로 시설비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부서와 신규사업 여부를 협의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0000은

- ① LED등 교체, 선반제작 등은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비로 집행하였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없이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신규사업을 발주하여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한 실무담당자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 실무책임자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000 시설개선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0000(0000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0000(0000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0000에서는 2000년 당초예산에 부기된 0000 시설개선공사를 4건으로 분할하여 발주하였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것으로 분할발주를 한정하고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분할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을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예산 이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공사에 대하여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하자책임의 구분이 용이하고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분할을 금지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경상남도OOOO에서는 2000년 “OOOO 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의 예산편성과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임이 명백한데도 시기를 달리하여 4건으로 분할 발주하는 등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결과

OOOO OOOO과에서는 “OOOO 시설개선공사”를 4건으로 분할 발주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① “OOOO유리온실 천장 실링 및 곡부 세척공사”는 온실전문시공업체가, ② “OOOO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는 지하 150m에 설치한 장치에서 지열을 끌어올려 냉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으로서 관련 전문업체가, ③ “OOOO 샤워실 설치공사”는 건축 관련업체가, ④ “OOOO 데크 등 보수공사”는 조경전문업체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사업들이었으며,

특히, ① “OOOO 유리온실 천장 실링 및 곡부 세척공사”는 7월 폭우로 인하여 온실에 누수현상이 발생하여 실시한 응급조치 공사로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② “OOOO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는 작물을 재배하던 중 지열냉난방 시설의 자동제어시스템에 이상이 생겨 관련 전문업체가 시행한 공사로 온실 운영 중에 돌발적으로 발생된 문제였으며, 앞으로 예산집행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관련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고, 금후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별 구체적 세부 부기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편성토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2000년 “0000 시설개선공사”는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이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량을 분할할 수 없고, 공사의 성격상 하자책임의 구분도 명확하여, 종합건설업(토목, 건축, 조경 등), 전기 등으로 발주할 수 있음에도 온실전문시공업, 전기업, 건축업, 조경업 등 4건으로 분할 발주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내외 경기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생활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 집행해야 함에도 2017. 8. 31. 이후 공사 4건을 시행하는 등 업무담당자로서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0000 0000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0000은

- ①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임이 명백한데도 시기를 달리 하여 4건으로 분할 발주한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 실무책임자 0000과(현 0000과) 지방00000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자 교육 등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권고·주의 요구

제 목 연구과제사업 생산물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마련

소 관 기 관 경상남도0000(0000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0000(0000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0000에서는 2000. 0월부터 농촌000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훈령 제786호, 2008. 10. 8.)을 참조하여, 「경상남도0000 생산물처분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생산물에 대한 관리와 처분을 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근거)

「경상남도0000 생산물처분에 관한 지침(2012. 2. 8.)」에서는 생산물 관리대장을 각 사업부서에서 작성 및 관리하고, 생산물은 시험연구사업용, 매각용, 보급용으로 구분하여 시험연구사업용을 최우선 배정하여 연구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각 과·소장은 생산물의 완전한 보관을 위하여 담당급으로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보관책임자는 과·소장의 명을 받아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관방법, 보관장소, 보관기간 등 보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촌000에서는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2008. 10. 8.(제786호) 일 부개정 한 이후에도 2015. 10. 7.(제1070호), 2017. 2. 23.(제1114호), 2019. 2. 28.(제1188호), 2020. 4. 9.(제1237호) 등 총 4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

000 규정 2020. 4. 9.(제1237호) 제7조(생산물 처분순위 및 처분방법) 제4항에 따르면 매각용으로 결정된 생산물이 보관 중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판매가 곤란한 경우와 출하비용이 생산물 매각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탁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수급자 및 보장시설·기초연금 수급자·기부식품등 지원 센터)에는 무상양여 또는 폐기하는 등 처분방법을 달리할 수 있고, 처분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는 사진, 인수·인계증 등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0000에서는 상위 기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지침을 수정하든지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생산물을 관리 및 처분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0000에서는 2000년 이후 농촌000의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이 4회나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관련 규정을 마련하거나 지침을 수정한 사실이 없다.

특히, 생산물을 무상양여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증빙자료(사진, 인수인계서 등)를 남겨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물 처분계획 공문결재에 폐기량만 작성하고 추가 증빙자료(사진 및 인수·인계증)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0000 0000과에서는 여러 부서(0과 0소)에서 생산물을 처분·관리하게 되어 종합적인 관리자가 없어 규정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면서, 2000년부터 「경상남도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제정하여, 폐기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첨부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

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0000은

- ① 농촌000의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경상남도 생산물 처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 생산물을 폐기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단체 또는 개인에게 기탁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수급자 및 보장시설·기초연금 수급자·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에도 인수·인계증을 첨부하는 등 처분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시기 바랍니다.(권고)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중징계·경징계·훈계·시정(고발) 요구

제 목 관외출장 여비 부적정 수령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0000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0000(000과)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0000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공무로 출장을 한 경우 출장공무원 으로부터 고속도로(하이패스) 통행료·숙박비 영수증 등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출장여비를 개인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르면, 공무원은 보수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

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여비지급 구분표의 각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13조에 따라서 국내자동차 운임은 **【별표2】**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2】 국내여비 지급표**

(단위: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 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20,000

한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3. 여비)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할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자료<sup>2)</sup>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임의 경우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및 「경상남도 지방공무원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에 따르면,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발여부를 결정할 경우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하고, 「도 고발 세부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

2) 증빙자료

- 출장지에서 식사 등의 용도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내역서 사본
- 기관을 방문한 경우 방문기관등에서 제공한 자료, 사진, 기타 입증자료
- 위 내용의 구비가 곤란한 경우 출장복명서

유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0000에서는 공무원이 관외 출장을 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지 및 출장내용을 확인하고 허가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출장한 공무원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실제출장 여부 및 증빙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공무원여비규정의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가. 출장여비 목적 외 사용

그런데 2000. 0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0000 0000과의 출장여비 집행내역 중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직접 발행한 영수증이 아닌 일반프린터로 인쇄한 하이패스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출장비를 지급받은 출장의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한 결과<sup>3)</sup>, 위 부서에서는 일반프린터 인쇄 영수증이 증빙자료로 사용된 총 0000건의 출장 내역(왕복은 1건 처리) 중 000건 0000천원이 실제 출장 없이 여비가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 부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정상적으로 발행한 하이패스 영수증을 파일로 다운 받은 후 입구영업소를 위조하거나, 각기 다른 출장자가 동일카드를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것으로 영업소명, 요금지급시간 등을 위조하거나, 하이패스 영수증의 일련번호는 동일할 확률이 거의 없음에도 각기 다른 일시에 동일한 하이패스 일련번호가 인쇄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수증을 위조하여 부당하게 출장여비를 수령하였다.

또한, 위 부서에서는 하이패스 영수증을 위조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명을 잘못 입력하거나, 출구와 입구 영업소를 동일하게 입력하기도 하고, 영업소의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하기도 하였으며, 출장명령일과 영수증의 출장일 또는 출장

3) 확인절차 : 의심영수증의 모든 카드번호 추출 → 카드번호 소유자 확인 → 카드별 하이패스 영수증 재출력(한국도로공사) → 여비지출내역과 도로공사 재출력 영수증 대조

년도를 맞지 않게 입력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0000에 상주하고 있는 '000 민간전문가들이 시군 현지출장이 많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들 000민간전문가들의 하이패스영수증 카드번호 중 일부(000, 000)도 증빙자료에 활용하였다.

한국도로공사에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부서의 출장 증빙자료인 하이패스 영수증에 표기된 총 72개의 카드(000 민간전문가 카드 6장 포함)에 대해 출장여비를 수령한 공무원에게 소유자 특정을 요청하였으나 42개의 카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임의의 번호를 조합한 카드번호위조로 추정)

이렇게 위 부서에서는 정상적인 하이패스 영수증을 파일로 다운받아 영수증에 표시된 거의 모든 내용(날짜, 영업소명, 영업소전화번호, 입구영업소명, 카드명, 카드번호, 하이패스 일련번호 등)을 다양하게 수정·위조한 영수증을 일반프린터로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런 방법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의심되는 출장비 규모는 00000천원에 이른다.

#### **나. 출장여비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확인 부적정**

한편, 0000 000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출장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해당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여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가. 출장여비 목적 외 사용'에서 확인되었듯이 출장자가 제출한 하이패스영수증이 육안으로도 쉽게 위조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증빙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청구 받은 여비를 그대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0000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출장 여비 부정수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원 모두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이러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이익보다 조직과 OO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점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을 제시하였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 0000은

① 아래와 같이 처분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00. 0. 0.부터 2000. 00. 00.까지 0000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은 물론 000000의 출장승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OO들이 부정여비를 수령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실제 출장 없이 0년 동안 0000천 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감독책임자 0000 000000(현, 0000) 00000 000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회계관계공무원인 000000으로 2000. 0. 0.부터 2000. 0. 0.일까지 근무한 000와 2000. 0. 0.부터 2000. 0. 0.까지는 000과 일상경비출납원, 2000. 0. 00. 부터 2000. 0. 0.까지는 00000, 이후 2000. 0. 0. 부터 감사 일 현재까지는 00000장(000과 소속)으로 근무한 000은 공통경비 마련 등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본인 및 소속 직원이 실제 출장을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장승인을 하였으며, 또한 소속 직원들의 하이패스 영수증 수정·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하여 직원들이 부정여비를 수령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들도 이 같은 허위 출장을 통해 000는 0000천 원, 000은 0000천 원 등 0백만 원 이상 고액 여비를 부정 수령하였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000와 000에 대해서는 각각 「중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0000과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인 일상경비출납원으로 2000. 0. 0.부터 2000. 0. 0. 까지 근무한 000와 2000. 0. 00. 부터 2000. 0. 0. 까지 근무한 000(현, 000000)은 소속직원들의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본인들도 허위 출장 여비를 수령하였지만, 부정수령 금액이 000는 000천 원, 000은 000천 원으로, 0백만 원 이하로 많지 않으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코 책임이 가볍지 않으므로 실무책임자 0000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0과(현, 000000) 지방00000 000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0000과에서 2000. 0. 00.부터 2000. 0. 0.까지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000는 부서 내 직원들이 출장 없이 허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여비를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빙자료가 육안으로도 쉽게 허위임을 알 수 있어 증빙자료를 반려하고 여비지출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묵인하고 여비를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하이패스영수증 수정·위조에 참여하여 부정여비 0000천 원을 수령하였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실무담당자 0000 0000과(현, 000과) 지방00000 000는 「중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2000. 0. 0.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담당자로 근무하는 000은 회계담당자로서 부서 내 직원들의 허위영수증 증빙자료 사용을 묵인·여비를 지출하고, 일부 허위영수증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회계담당자로 근무한 기간이 감사일 현재 0개월 남짓 이라는 점, 본인의 부정여비 수령액이 0년 동안 0건 000천 원으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무담당자 0000과 지방00000 000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직접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제 출장은 가지 않고 0백만 원 이상 여비를 부정 수령한 실무책임자 0000 000과(현, 0000과) 지방 00000 000, 0000 0000과(현 0000과) 지방00000 000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 실제 출장 없이 0백만 원 이상 여비를 부정 수령하고, 허위의 영수증도 작성한 실무담당자 0000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0과 지방 00000 000, 000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과(현,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0과(현,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과 지방00000 000, 0000 000과 지방00000 000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할 예정입니다.

② 또한, 이 건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건에 해당되므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가산징수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 해당 되므로, 부정수령 여비는 전액 환수토록 하고, 부정수령 여비외에도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유연근무자 출·퇴근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 0000(0000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 0000

내 용

### 1. 현황(업무개요)

0000에서는 일·가정 양립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차출퇴근형(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는 1일 8시간의 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로서, 실시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하며, 당일까지 신청하되 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유연근무제 신청에 따른 조기 출·퇴근자의 경우 반드시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0000에서는 2000년 0월부터 2000년 0월까지 농업000 000 등 00명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제를 승인 받았으나, 그 중 00명이 출·퇴근 시 총 000회에 걸쳐 지문인식기를 등록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또한, 0000에서는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한 차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관계기관 의견 및 판단

0000에서는 해당 위반사실에 대해 추가 소명자료(출장, 연가, 지문등록시스템 오류 등) 제출을 통해 총 위반 건수 000회 중 000회는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2000년 감사결과 조치로 한차례 교육을 실시한 내역을 제출하며, 향후 관련 지침 교육 및 주기적인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추가 소명자료(출장, 연가, 시스템 오류 등)를 확인한 결과, 개인별 위반 건수 중 대부분이 인사과 자료, 복무시스템 자료 등으로 소명되어 상습적인 출·퇴근 지문 미인식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00회 이상 위반자 중 000과 000(0회)의 경우도 퇴근 지문 인식은 정상적으로 하였으나 출근 지문을 인식하지 않아 지적된 것으로 승인받은 유연근무제 시작시간이 9시 인 것을 감안한다면 정상참작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0000과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는 0년 전 종합감사 결과 엄중주의토록 현지조치 하였음에도, 또다시 유연근무제 실시 중 00회 이상 지

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등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은 정상참작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 0000는

- ①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위반하여 유연근무제 실시 중 지문인식기에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000과 지방00000 000, 지방00000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